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519606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23.

판결 선고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2,400,000,000원 한도 내에서, 960,118,895원과 그중 661,401,755원에 대하여 2024. 4. 1.부터 2024. 10. 1.까지는 연 8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236,815,310원을
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현종

별지